

기본급 142,300원 인상!
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
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



2022.04.29(금)

지부교섭 속보

3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3차 지부교섭_질의응답①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

일방통행 금지! 노사공동으로!

3차 교섭, 질의응답 진행

3차 지부교섭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4월 28일(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열린 3차 지부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은 통일요구안인 산업전환대응과 위험성평가 요구안에 대해 질문했다. 많은 질문과 응답이 오고갔지만, 금속노조 통일요구안의 핵심은 노사 공동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행보 보다 노사 공동으로 시행해야 산업전환대응도 위험성평가도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 공동으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산업전환은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이다. 노동자들도 당연히 지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안을 회사가 노조와 논의없이 일

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위험성평가도 마찬가지다. 매년 시행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가 가능하다.

차기 교섭도 질의응답 이어질 예정

다음주 목요일이 어린이날인 관계로 차기교섭은 5월 12일(목) 한국JCC에서 열린다. 차기교섭에서는 지부요구안(임금인상, 퇴직년도 연차수당,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4/28(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 **대한이연 현장순회, 산재추모의 날 결의대회**



3차 교섭 속기록

산업전환 정부지원 노사합의로 활용해야

사 : 오늘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 2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겠다. 작년 합의로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전환대응 기구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부, 중앙 차원에서 운영하는게 있는지? 혹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곳 있는지?

노 : 현재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안다. 중앙, 지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사 : 산업전환대응을 정부에 함께 요구한다고 했는데, 정부에 요구한 것이 있는지?

노 : 작년 합의 이후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었다. 집단교섭 외 대각선교섭 사업장도 취합해서 더 많은 사업장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 : 정부,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할 때 산업전환 대응용인지 아닌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

노 : 노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주셔야 한다. 상호간에 협의하고 판단하면 된다.

사 : 지원제도 범위를 구체화 하는 건 어떤지?

노 : 지원제도가 대부분 컨설팅, 경영 지원, 고용안정 지원이 패키지로 되어 있다. 경영지원, 고용보호를 위한 지원 모두 노사합의로 하자는 취지다. 지원 전반에 대해 컨설팅할 경우 사전에 정보를 투명하게 노조에 공유해야 한다.

사 : 노조와 합의가 안되면 못한다는 건지?

노 :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다. 사업전환은 회사의 존폐도 달린 문제인데 회사 망하게 하려는 노사관계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

호 협의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자.

사 : 작년에 기존합의하고 다르게 합의한 사업장은 올해 5항만 추가하면 되나?

노 : 합의 안했거나 다르게 합의한 사업장은 4항까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 : 위험성평가 질의하겠다. 노사공동실행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별개로 또 개최되어야 하나?

노 :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노조가 같이 해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 그래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산보위와 실행위원회는 다른 성격의 기구다. 산보위는 전반적 계획을 의결하고, 실제 현장에 대해 조사하는 집행은 실행위에서 한다. 중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열어둘 수 있다.

사 : 위원장을 노사 양측 공동으로 한다는 건 위원장이 2명인건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노 :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 지양하고 노사 공동으로 하자는 정신을 담는 의미다.

사 : 연 1회 외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무조건 해야 하는지?

노 : 2항 사례들의 경우는 실행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나면 조사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경우 요구하게 될 거다.

사 : 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 합의사항과 차이가 있나?

노 : 유급으로 보장하자는 것인데, 해석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한 것이다. 의미는 같다.